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 ·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전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이준동, 이종혁, 최종혁, 조찬만, 김창희(기소), 배상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희경(국선)

【원심판결】1. 대전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정721, 2011고정809(병합) 판결 / 2. 대전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고단2125 판결, 2011초기1117 배상명령신청 / 3. 대전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고정2775 판결 / 4. 대전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고단821 판결

【주문】

1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4 원심판결의 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해석상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1) 공갈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체육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나 무고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제지하자 이를 밀치고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공소외 9, 10, 11, 12, 13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14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15, 16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7과 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감기 몸살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뿐 의사인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해죄 부분, 제3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제4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 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제1, 2, 3, 4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2, 3 원심판결은 각 유죄판결을, 제4 원심판결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두가지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 부분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친구였던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2007. 3. 30.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지만,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묻는 등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업무를 방해할 만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자.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2차례에 걸쳐 승용차 및 돈을 교부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고차 매장을 이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그 이전부터의 피고인의 욕설, 폭언, 원치 않는 계속된 방문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금원등 요구에 응한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 인수와 별개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자녀의 유치원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2010. 2.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체육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체육관 임대료도 2009. 5. 이후 연체하는 등 이사건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샤워 시설 등 체육관 시설 일부를 확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자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인수하든지, 인수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체육관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반환받을 수단으로 피고인의 체육관인수 제의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고죄 부분

-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5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모욕죄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업무방해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 2, 19, 피해자 공소외 18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 및 ○○초등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4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검사(제4 원심판결의 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해석상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1) 공갈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체육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나 무고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제지하자 이를 밀치고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공소외 9, 10, 11, 12, 13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14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15, 16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7과 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감기 몸살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뿐 의사인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해죄 부분, 제3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제4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 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제1, 2, 3, 4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2, 3 원심판결은 각 유죄판결을, 제4 원심판결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4 원심판결에 대하

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두가지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공갈죄 부분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친구였던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2007. 3. 30.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지만,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묻는 등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업무를 방해할 만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2차례에 걸쳐 승용차 및 돈을 교부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고차 매장을 이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그 이전부터의 피고인의 욕설, 폭언, 원치 않는 계속된 방문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금원 등 요구에 응한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 인수와 별개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자녀의 유치원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2010. 2.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체육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체육관 임대료도 2009. 5. 이후 연체하는 등 이사건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샤워 시설 등 체육관 시설 일부를 확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자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인수하든지, 인수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체육관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반환받을 수단으로 피고인의 체육관 인수 제의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고죄 부분

-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5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모욕죄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업무방해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 2, 19, 피해자 공소외 18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4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검사(제4 원심판결의 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해석상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1) 공갈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상해죄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체육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나 무고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제지하자 이를 밀치고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공소외 9, 10, 11, 12, 13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14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15, 16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

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7과 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감기 몸살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뿐 의사인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해죄 부분, 제3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제4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 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제1, 2, 3, 4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2, 3 원심판결은 각 유죄판결을, 제4 원심판결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두가지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 부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친구였던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2007. 3. 30.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지만,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묻는 등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업무를 방해할 만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2차례에 걸쳐 승용차 및 돈을 교부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고차 매장을 이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그 이전부터의 피고인의 욕설, 폭언, 원치 않는 계속된 방문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금원 등 요구에 응한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 인수와 별개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자녀의 유치원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2010. 2.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체육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체육관 임대료도 2009. 5. 이후 연체하는 등 이사건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샤워 시설 등 체육관 시설 일부를 확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자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인수하든지, 인수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체육관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반환받을 수단으로 피고인의 체육관인수 제의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고죄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5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마. 모욕죄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업무방해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 2, 19, 피해자 공소외 18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4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검사(제4 원심판결의 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해석상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1) 공갈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 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체육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나 무고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제지하자 이를 밀치고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공소외 9, 10, 11, 12, 13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14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15, 16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7과 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감기 몸살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뿐 의사인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해죄 부분, 제3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제4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 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제1, 2, 3, 4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2, 3 원심판결은 각 유죄판결을, 제4 원심판결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두가지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 부분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친구였던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2007. 3. 30.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지만,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묻는 등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업무를 방해할 만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2차례에 걸쳐 승용차 및 돈을 교부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고차 매장을 이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그 이전부터의 피고인의 욕설, 폭언, 원치 않는 계속된 방문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금원 등 요구에 응한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 인수와 별개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자녀의 유치원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2010. 2.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체육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체육관 임대료도 2009. 5. 이후 연체하는 등 이사건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샤워 시설 등 체육관 시설 일부를 확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자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인수하든지, 인수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체육관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반환받을 수단으로 피고인의 체육관 인수 제의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고죄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5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모욕죄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업무방해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 2, 19, 피해자 공소외 18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다(다만, 제4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검사(제4 원심판결의 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해석상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1) 공갈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상해죄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체육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나 무고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제지하자 이를 밀치고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공소외 9, 10, 11, 12, 13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14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15, 16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7과 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감기 몸살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뿐 의사인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해죄 부분, 제3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제4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 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제1, 2, 3, 4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2, 3 원심판결은 각 유죄판결을, 제4 원심판결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두가지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공갈죄 부분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친구였던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2007. 3. 30.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지만,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묻는 등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업무를 방해할 만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2차례에 걸쳐 승용차 및 돈을 교부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고차 매장을 이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그 이전부터의 피고인의 욕설, 폭언, 원치 않는 계속된 방문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금원 등 요구에 응한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 인수와 별개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자녀의 유치원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2010. 2.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체육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체육관 임대료도 2009. 5. 이후 연체하는 등 이사건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샤워 시설 등 체육관 시설 일부를 확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자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인수하든지, 인수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체육관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반환받을 수단으로 피고인의 체육관 인수 제의에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고죄 부분

-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5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모욕죄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업무방해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 2, 19, 피해자 공소외 18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4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검사(제4 원심판결의 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해석상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가) 사실오인
- (1) 공갈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체육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나 무고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제지하자 이를 밀치고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공소외 9, 10, 11, 12, 13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14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15, 16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7과 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감기 몸살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뿐 의사인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해죄 부분, 제3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제4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 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제1, 2, 3, 4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2, 3 원심판결은 각 유죄판결을, 제4 원심판결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두가지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 부분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친구였던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2007. 3. 30.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지만,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묻는 등 피해자의 중고 차 매매업무를 방해할 만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2차례에 걸쳐 승용차 및 돈을 교부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고차 매장을 이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그 이전부터의 피고인의 욕설, 폭언, 원치 않는 계속된 방문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금원 등 요구에 응한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 인수와 별개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자녀의 유치원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2010. 2.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체육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체육관 임대료도 2009. 5. 이후 연체하는 등 이사건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샤워 시설 등 체육관 시설 일부를 확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자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인수하든지, 인수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체육관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반환받을 수단으로 피고인의 체육관 인수 제의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고죄 부분

-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5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모욕죄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바. 업무방해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 2, 19, 피해자 공소외 18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4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